

#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46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 23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의 법명 변경, 일부조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 →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 
(안 제2조)
- 기금출납원 개정 :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 → 농업정책과 주무담당  
(안 제11조 제1항 제2호)
-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생략 근거 마련(안 제12조 제3항)
  -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
- 융자대상사업 관련조항 변경 : 제4조제1항 → 제5조제1항(안 제14조)

## 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
  - 고성군 공고 제2009 - 862호(2009. 11. 24 ~ 2009. 12. 14)
  - 의견제출사항
- 관계법령 및 근거
  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  -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4. 본 문 : 불임과 같음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와 제2호 중 「농업·농촌 기본법」을 각각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하고, 제3호 중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"을 농작물 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수산업에서 생산되는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"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"를 "농업정책과 주무담당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."를 "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. 단,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 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14조중 "제4조제1항"을 "제5조제1항"으로 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일몰제 적용)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_____
1. "농·수산업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과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.	1. "농어업" --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_____
2. "농·어업인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	2. _____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_____ _____ 제11호 _____
3. "농·수산물"이라 함은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과 「수산업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.	3. _____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, 수산업에서 생산되는 _____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<b>제11조(회계공무원)</b>	<b>제11조(회계공무원)</b>
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	① _____
1. 기금운용관 : 농업기술센터소장 2. 기금출납원 : 농업정책업무 담당주사	1. (현행과 같음) 2. 기금출납원 : 농업정책과 주무담당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b>제12조(융자대상자 선정)</b>	<b>제12조(융자대상자 선정)</b>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읍·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, 군수는 읍·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.	③ _____  _____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. 단, 당해연도 융자규모보다 신청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선정 할 수 있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4조(융자 및 상환조건) 제4조제1항에</b>          규정된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          시기, 융자기간, 상환방법, 상환이율, 연체이          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14조(융자 및 상환조건) 제5조제1항--</b></p> <hr/> <hr/> <hr/>